

무국적자에 대한 국제적 보호

사회: 최 영 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일시: 2006년 6월 20일 (화) 오전 10:00~12:30

장소: 국회 귀빈식당(본청 3층)

◎ 무국적자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우리의 과제 1

박 찬 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 UNHCR and Statelessness 11

제니스 마샬 (UNHCR 서울사무소 대표)

◎ 국적법 등 무국적자 관련 국내법 21

유 재 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부 록 >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29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49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75

◎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85

무국적자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우리의 과제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무국적자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우리의 과제

박 찬 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1. 국적의 실질적 의의

(1) 국적이란

국적(nationality)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받는 법적 지위’를 뜻함. 예컨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말함. 국적부여의 요건은 국내법의 문제로 각국의 법률에 따름

(2) 국적 부여의 실질적 의미

한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한 나라에서 거주하면서도 투표를 할 수도, 여권을 신청할 수도, 혼인신고를 할 수도 없음. 나아가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 의료 진료를 받을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도 국적이 없는 한 부여되기 어려움. 한 마디로 국적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공기와 같은 것임, 공기가 없을 때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국적도 그러한 것임. 따라서 국적은 모든 인간의 생존의 필수조건임

2. 무국적자(stateless)란 어떤 사람들인가

국적이 없는 자임, 무국적자는 국제법상 두 가지 유형이 있음

(1) 법적 무국적자(de jure stateless)

이것은 어떤 국가의 법률에 의해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거나 개별적인 결정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임

(2) 사실상 무국적자(de facto stateless)

이것은 국적을 부여한 국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어떤 사람이 법적 무국적자임을 증명할 수 없고 특정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함

3. 무국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국적자는 각국이 상세한 국적법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국적 취득, 상실 및 거부에 관한 여러 국제법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백만명의 무국적자가 발생함, 이것은 각국의 법률 간의 충돌¹⁾, 국가 영토의 이양²⁾, 차별,³⁾ 출생신고 미신고,⁴⁾ 국가에 의한 국적의 강제적 박탈,⁵⁾ 국적의 포기⁶⁾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
- 1) 예를 들면 A국은 혈통주의에 의해 국적을 부여하고, B국은 출생지주의에 의해 국적을 부여하는 경우, 어떤 사람의 부모가 모두 B국민으로서 A국에서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는 무국적자가 됨
 - 2) 예를 들면 식민지가 독립이 되는 경우 제3국에 거주하는 식민지 출신의 사람들은 신생 독립국가의 국적 취득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음
 - 3) 예를 들면 어떤 영토 내의 사람들이지만 그 거주국이 국적 취득 요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4) 예를 들면 불법이민자들의 자녀들은 출생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신분 증표 없이 성장한 뒤 부모와도 절연되어 부모의 출신국을 확인할 수도 없음, 이런 경우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됨

법적 무국적자 혹은 사실상 무국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임

4. 한국에도 무국적자가 있는가

국제사회에서 무국적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대량의 불법이민이 용이하고 민족적 차별 등이 많은 곳임, 이런 이유로 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무국적자가 많음. 이에 반해 한국은 지정학적 이유 등으로 위 지역에 비해 무국적자가 만들어질 여지가 매우 적음. 단, 불법이민자에 의한 사실상의 무국적자의 경우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많아질 것임

5. 무국적자의 보호와 감소를 위한 국제법 체제 개관

(1) 국적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 인권인가

■ 세계인권선언 제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아니 한다”

마땅히 국적을 가질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해야 하나 세계인권선언의 이 규정은 후에 발전한 인권조약 등에 반영되지 않음, 이로 인해 ‘국적을 가질 권리’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으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음(국제관습법으로도 보지 않음). 따라서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국적을 인정하라는 것을 기본적 인권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임

-
- 5) 예를 들면 독재국가의 경우 재외 동포인 자국민의 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경우가 있음
 - 6) 예를 들면 어떤 국가는 국민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데 이 때 다른 나라의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포기와 동시에 무국적자가 될 수 있음

(2) 무국적자 보호를 위한 체계

■ 국제무국적자 보호 협약에 의한 보호(국제난민법 유사체계)

무국적자 보호는 역사적으로 보아 난민보호와 직결되어 왔음, 즉, 2차세계대전 이전 국제난민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는 난민과 무국적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음. 2차 대전 이후 난민보호의 시급성 때문에 1951년 난민협약을 우선 채택하였고 무국적자 문제는 추후 부속 의정서로 채택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무국적자지위협약)이 만들어졌고, 이는 1951년 난민협약과 많은 면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 이어 무국적자의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적극적 방법(출생 시에 무국적의 상태를 방지하는 방법 등으로 무국적 상태의 발생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모색되었는데 그것이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무국적자감소협약)임

■ 국제인권법에 의한 보호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은 지구적 차원에서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국적의 상실을 막고 국적 취득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무국적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다음과 같은 국제조약이 열거될 수 있음

- ▶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ationality of Married Women)⁷⁾
-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⁸⁾
-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⁹⁾

7) 제1조 “자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의 성립이나 해소, 혼인 중 부의 국적 변경이 자동적으로 처의 국적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8) 제24조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 ▶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¹⁰⁾
- ▶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¹¹⁾
- ▶ 국적에 관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¹²⁾
- ▶ 아동의 권리 및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¹³⁾

6. 무국적자의 인정절차와 보호 내용(무국적자 지위 협약)

(1) 무국적자의 보호와 난민보호는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무국적자 지위 협약은 무국적자를 난민에 준해 보호하도록 체약국에 요구함, 따라서 체약국에 의해 무국적자로 인정되면 난민과 유사한 체약국의 국내법적 보호를 받음

(2) 무국적자 인정절차는 어떤 것인가

■ 무국적자임에 대한 증명

협약의 정의에 맞는 무국적자임이 증명되어야 함, 즉, 어떤 사람이 어떤 관련 국

-
- 9) 제9조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남편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남편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 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 10) 제7조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1) 제20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다른 국적을 가질 권리가 없는 경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국적 또는 국적을 바꿀 권리를 임의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12) 이 협약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마련한 지역적 법제로서 국적법의 상충문제를 다룬 1930년 헤이그 협약 이후 국적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법의 모든 발전을 통합시킨 단일 문서임, 무국적자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규정이 있음
 - 13) 제6조 “모든 아동은 출생 후 등록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은 국적 취득권을 가진다”

가와도 법적 유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이것은 난민인정절차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증명책임을 가지고 있음, 통상은 관련 국가가 자국민이 아님을 문서로 회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국가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는 이 거부 자체가 하나의 증거(무국적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간주될 수 있음

■ 무국적자 인정절차

무국적자로 인정되면 난민 유사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인정절차는 난민인정절차와 유사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이유로 난민인정절차에 무국적자도 포함하여 인정절차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음,¹⁴⁾ 무국적자 인정절차도 난민인정절차와 마찬가지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함¹⁵⁾

(3) 무국적자로 인정되면 어떤 권리가 보장 되는가

무국적자로의 인정은 난민인정과 거의 같은 효과가 있음, 체약국은 무국적자에게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함(협약 제7조 제1항). 협약은 몇 가지 권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외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유급고용(제17-19조), 공교육(제22조), 주택(제21조), 이동의 자유(제26조)등이 그것이고, 일부 권리에 대해서는 체약국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바, 신앙의 자유(제4조), 예술상의 지적소유권(제14조), 재산권(제16조), 노동과 사회보장(제24조) 등이 그것임, 나아가 무국적자로 인정되면 난민인정자와 마찬가지로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입출국의 자유가 보장됨(제28조)

14) 프랑스의 경우 난민과 무국적자는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를 위한 프랑스 사무소(French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OFPRA)’가 담당하며 스페인도 ‘비호 및 난민 사무소(Office for Asylum and Refugees, OAR)’에서 무국적자의 인정절차를 담당함

15) UNHCR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는 다음과 같음: 신청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신청을 개별적으로 받을 권리, 신청의 객관적 처리에 관한 권리, 절차의 기한에 관한 권리, 신청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신청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법적 자문 및 통역을 제공 받을 권리, 비밀 보장 및 자료 보호에 관한 권리, 결정 및 결정 이유를 제공 받을 권리, 결정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4) 한국의 이행여부

한국은 1962년 무국적자 지위 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아직껏 이의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조치를 취한 바가 없음, 이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난민인정절차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는 것임, 아마도 가입 당시에는 무국적자 논의가 국내적으로 거의 없었고 무국적자 지위 협약의 국내이행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됨. 이러한 사정이므로 현재 무국적자가 한국에 있다 해도 당해인이 한국 정부에 무국적자 인정신청을 하여 협약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실정임

7. 1961년 무국적자감소협약의 내용과 한국의 가입 필요

무국적자감소협약은 처음부터 무국적 상태의 발생을 막아 볼 생각으로 만든 협약임, 이 협약은 출생 시에 무국적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제1조-4조), 국적의 상실 혹은 포기과 관련하여 무국적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제5-7조), 국적 박탈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무국적자를 막는 장치(제8-9조), 영토의 이양 과정에서 무국적자를 막는 장치(제10조)를 두고 있음. 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 특별한 의무가 부가되는 것은 사실상 협약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임,¹⁶⁾ 그러나 이중에서 한국은 이미 국적법에서 외국인 기아에 대해 국적을 부여하고 있고(국적법 제2조1항) 부모 중 일방이 한국인이면 자녀는 한국적을 취득하므로(국적법 제2조1항) 이미 몇 개 조문은 충족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 외의 출생자에 대한 국적 부여만이 문제가 됨. 그러나 이 부분도 협약이 무조건적으로 국내 출생 외국인에 대해 국적을 부여하라고 하는 것(즉, 국적 취득에서 출생지주의를 채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법에 일정한 재량을 주고 있으므로 특별히 큰 부담으로 생각되지 않음. 따라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난민과 같이 무국적자에 대한 의무분담(burden sharing)을 하여야 한다면 조만간 이 협약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16) 다른 규정은 우리 국적법 하에서도 이미 준수되고 있는 사항이고, 일부는 순수히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로 향후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 것임

8. 유엔난민기구(UNHCR)의 역할

UNHCR은 1950년 창립초기부터 무국적자 문제에 대처함, UNHCR은 국제조약, 유엔총회의 결의 및 UNHCR 집행위원회의 위임에 의해 무국적자에 관한 임무를 부여 받음. 1961년 무국적자감소협약은 “이 협약상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청구의 심사를 신청하고 담당기관에 대한 청구제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의 필요를 규정하였고 유엔총회는 이 협약 발효 이후 UNHCR이 그 임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동기구가 무국적자의 보호를 위한 활동과 무국적자지위협약과 감소협약의 가입을 위한 활동을 벌려 나갈 것을 요구함, 이에 따라 UNHCR은 각국에서 위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적법 마련과 그 실행을 위한 정부 공무원 상대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9. 우리의 과제

위에서 본대로 한국은 국제난민보호 체제로 이루어진 무국적자 보호에 관한 기본 인식이 부족한 상태임, 이로 인해 국제난민법 체제 하에서의 국내 이행입법을 만든 것처럼 무국적자에 대해서도 무국적자지위협약 가입 이후 국내이행입법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함, 나아가 1961년 무국적자감소협약도 현재의 우리의 국적법 하에서는 특별히 큰 부담으로 된다고 볼 수 없음.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조속한 시일 내에 무국적자에 대해서도 그 인정절차와 국내 보호문제를 난민에 준해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1961년 무국적자감소협약의 가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UNHCR and Statelessness

제니스 마샬 (UNHCR 서울사무소 대표)

UNHCR and Statelessness



Scope of
Involvement
and
State Best
Practices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 **1954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58 signatories)**

Defines a stateless person and what minimum rights s/he should be accorded in a State where the person is recognized as being stateless.

- **1961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30 signatories)**

Minimum standards for the acquisition, loss, and deprivation of citizenship rights, aimed at addressing the causes of statelessness.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 Art 15 of UDHR: *“Everyone has the right to a nationality. No one shall be deprived of his nationality nor denied the right to change his nationality.”*
- 1957 Convention on the Nationality of Married Women
- Art. 5 of CERD: equality before the law,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color, or nationality or ethnic origin.
- 1966 ICCPR: Art. 24 refers to a child’s right to be registered and have a name and nationality. Art. 12 on freedom of movement is also relevant.
- Art. 9 of 1979 CEDAW: Women shall be granted equal rights with men to acquire, change or retain their nationality, and also with respect to the nationality of their children.
- Art. 7 of 1989 CRC: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UNHCR’s Statelessness Mandate

- Art. 11 of 1961 Convention: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promote the establish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 of a body to which a person claiming the benefit of this Convention may apply for the examination of his claim and for assistance in presenting it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274 (XXIV) of 1974: *asked UNHCR to assume these responsibilities provisionally, which was reconfirmed by UN GA Resolution 31/36 in 1976.*
- UN GA Resolution 50/152 of 1996 *encouraged UNHCR to “continue her activities on behalf of stateless persons, as part of her statutory function of providing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of seeking preventive action.”*

Based on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UNHCR shall promote.....

- A) The protection of stateless persons (1954 Convention).
- B) The reduction and prevention of statelessness (1961 Con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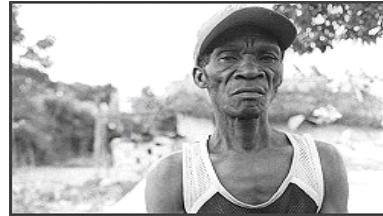
Following its mandate for dealing with statelessness situations, UNHCR.....

-urges States to accede to the 1954 and 1961 Conventions on statelessness.
-provides technical and advisory services to States on their nationality legislation and practice.
-encourages and assists States to address protracted statelessness situations.



Statelessness is a large scale problem world-wide:

- 9–11 million people in the world are stateless. As a point of comparison, 9–10 million are refugees.
- Statelessness can result from:
 - a) arbitrary deprivation of nationality
 - b) conflicting nationality laws in different States
 - c) state succession
 - d) discrimination
 - e) administrative practices



....but can be solved with knowledge and political will

In Ukraine around 250,000 formerly deported Crimean Tatars have been able to return and obtain citizenship:

- Essential was the decision of the Government of Ukraine to amend the residence, language and income requirements for naturalization candidates, as well as bilateral agreements that were reached with several States on simplified procedures for change of citizenship.
- Changes were introduced to the Citizenship Law in 2001, reducing the chance that individuals would become stateless in the process of changing citizenship.
- An extensive media campaign and legal advise services for the citizenship applicants further facilitated the process.





In Sri Lanka citizenship has been granted to nearly 200,000 individuals descending from Indian Tamils:

- The 2003 Sri Lankan Act to Grant Citizenship to Persons of Indian origin through simplified procedures provided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UNHCR to organize a citizenship campaign together with the Government and a trade union.
- People's awareness was raised through a media campaign and volunteers were trained to work at mobile registration units.



In Central Asia most of those who fled the civil war in Tajikistan are stateless because of the provisions of the 1995 Tajikistan Citizenship Law and conflict of laws with other states.

- In **Kyrgyzstan** more than 5,000 refugees from Tajikistan (most of them ethnic Kyrgyz) have been granted citizenship since 2001 through individual review of naturalization applications.
- In **Turkmenistan** 13,250 individuals were granted citizenship by a presidential decree issued on 4 August 2005. Some 10,000 of them are *prima facie* refugees from Tajikistan.



In many countries women can only transmit their nationality to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or to a stateless father, leaving children stateless when the father is a foreigner.

- In **Morocco** the King announced in 2005 that the Citizenship Law will be amended “to reflect changes in Moroccan society.” As a result women will be entitled to transmit their nationality on an equal basis with men.
- **Egypt** was the first North African country to move in the direction of gender equality in transmission of nationality of children in 2004.
- It is also expected that **Algeria** will soon remove its discriminatory nationality legislation.

The dissolution of Yugoslavia led many thousand long term residents of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most of them ethnic Albanians and Roma, to become stateless

because they did not possess a republican citizenship before the State’s dissolution and failed to register within the one year deadline stipulated by the 1992 Citizenship Act. After the Act was amended in 2004 to include a new transitional provision, most of them have been able to acquire citizenship, assisted by a citizenship campaign.



Know-how and resources can facilitate the avoidance and reduction of statelessness, but most important is the political will to adopt, amend and implement national legislation.

국적법 등 무국적자 관련 국내법

유재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국적법 등 무국적자 관련 국내법

유 재 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지원대상으로서의 무국적자와 재조명

무국적자란 문자 그대로 어떤 나라의 국적도 가지지 않은 자를 일컫는다. 따라서 무국적자들은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마저 누릴 수가 없다. 즉 투표의 권리도, 교육받을 권리도, 직업을 가질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유니세프는, 이렇게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당한 무국적자가 전세계적으로 1,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이상적 무정부주의자들처럼 자발적으로 무국적자가 된 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국적자라 함은 자의와 무관한 무국적자들을 의미하며, 크게 ‘법적 무국적자’와 ‘사실상 무국적자’로 구분된다. ‘법적 무국적자’는, 어떤 국가의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무국적 상태가 되거나 개인의 개별적인 결정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무국적자’는 국적이 없다는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유효한 국적도 없고 국가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세미나 뿐 아니라 유엔난민기구 등에서 지원과 보호를 요하는 무국적자 문제는 ‘법적 무국적자’보다도 ‘사실상 무국적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1954년 채택된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각 체결국은 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가 그 국가의 보호를 포기함에 있어서 유효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본 협약이 무국적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를 그에게 적용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구속력 없는 권고를 통해 ‘사실상 무국적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물론 20세기 이후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무국적 문제가, 국가간 해석의 차이나 민족적, 종교적, 정치적 요인, 또는 국경선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실상 무국적자’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상기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무국적자의 경우, 대량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법적 무국적자’와 ‘사실상 무국적자’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도 없으며, ‘법적 무국적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무국적자’보다 훨씬 더 국제법상 혹은 기타의 도움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에도 나와 있듯이 “한 개인이 어떤 국가로부터 국적을 부인 당한 경우, 해당국가에서 국적 청구 시 필요한 경제력과 전문지식을 개인이 가지지 못하기에 국제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의 시대는 국적 선택에 대한 자유가 더욱 보장되고 있으며, 실제로 귀화나 국적 회복 신청 등의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법적 무국적자’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제도 보완이 요구되며, ‘법적 무국적자’와 ‘사실상 무국적자’를 따로 떼어내 논의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무국적자’의 개념에 더해 구제를 필요로 하는 ‘법적 무국적자’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 대상으로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표 1> 귀화 및 국적회복 현황

연도 \ 종류	귀화	국적회복
2001년	724명	926명
2005년	12,299명	4,675명

(자료 출처: 법무부)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국적자의 문제가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 거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국적자가, 국적을 소유한 국민이 누려야 할 여러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탈출한 난민보다는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무국적자의 문제는 특

정 지역 등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 범세계적 이슈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무국적자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들도 무국적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이거니와 관련 법규정도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국적자 문제의 해결과 감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첫째, 무국적자들의 실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국적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홍보되어야 한다. 무국적자도 난민과 같이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무국적자들의 현실이 정확히 알려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개별국가들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자국과는 직접 연관이 없지만 무국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요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두번째다. 국가의 국제적 지원 확대는 무국적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국제협약 등 가입을 통한 의지적 지원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 1954년 체결된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체결국은 2005년 기준 57개국이며, 1961년 체결된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체결국은 2005년 기준 30개국에 불과한데, 이는 특별한 이유보다도 사안에 대한 충분치 못한 정보와 적극적 가입에의 동기 부족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국은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만 가입되어 있다.

세 번째는 국제단체들의 활동 강화이다. 유엔난민기구가 1950년 창립 초기부터 무국적자 문제에 대처해 왔다고 하지만, 그 주요 대상은 무국적 난민의 문제였다. 따라서 난민의 개념과 분리된 무국적자들은 관심 영역 밖으로 내몰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이 점차 커지면서 난민 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무국적 상태의 감소와 무국적자에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1995년 유엔난민기구의 무국적자 문제에 관한 포괄적 지침, 즉 ‘무국적 방지와 감소 및 무국적 보호에 관한 결정’ 채택과 1996년에 무국적자를 위한 활동

및 1954년, 1961년 협약의 가입 및 실행의 도모를 위하여 유엔난민기구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하는 결의(A/RES/50/152)를 유엔 총회가 채택한 것은 무국적자 처리를 위한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조처들이다. 이와 함께 2002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보호의제와 2004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위 합의 사항, 그리고 2005년 유엔 인권위 결의 등은 무국적 상태 및 무국적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환기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국제의원 연맹에서도 유엔 난민기구와 연계하여 보편적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무국적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개별 국가들과 국제기구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별 국가와 무국적자 지원을 위한 전문 기구가 상호 협조하고 긴밀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 무국적자 관련 대한민국 동향과 국내법

전술한 것처럼 무국적자 관련 국내외적 동향은 아직까지 기대 수준 이하이다. 무국적자 관련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 조차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며 무국적자에 대한 직접적인 국내법 규정 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소수의 국가들만이 무국적자 등록제도를 갖추고 있을 뿐, 무국적자 및 난민의 문제는 웬만하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듯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무국적자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와 법규정은 물론 기본 개념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무국적자 문제의 현실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발생 빈도도 희소하고 국민이 되는 권리 또는 난민 관련 조항으로 모두가 포괄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경우, 무국적자하면 난민을, 난민하면 대부분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연상하고 있다. 무국적자와 난민의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의 조직체제도 그러한 유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국민이 되는 요건 및 절차는 우리 국내법 중 국적법에서 정하고 있고, 주관 부서는 법무부이다.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것은 법무부 체류

정책과에서, 그리고 난민 문제는 신설된 지 1년여 밖에 안되는 법무부 국적 난민과 소관이다. 무국적 문제를 다루는 독립부서는 없으며, 국적난민과나 체류정책과 모두 무국적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이나 기존 통계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다. 여하간 우리나라에서 무국적자의 문제라 함은 난민의 개념을 떠나 국적의 소유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 입국 무국적자의 양태와 현황을 조사해 볼 수 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관심 있게 볼 수 있는데, 첫째 법 적용 문제로 인한 무국적이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구제 조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시적인 무국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귀화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차적 착오로 인해 무국적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적법 제10조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에 의하면, 1항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원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6개월 후 원 국적을 포기하면서 무국적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한 무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적법 제11조 ‘국적의 재취득’ 1항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적시함으로써 국적 취득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둘째, 탈북자의 경우다. 아래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새터민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국적과 처우 문제가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었다. 국제적 시각에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일단 국내에 입국하는 새터민들의 경우,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북한을 떠나와 북한의 국적을 부인하고 그렇다고 한국의 국적

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무국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북한주민들도 엄격한 의미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이탈 입국자가 국적 판정절차를 거쳐 북한에 거주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받고 무국적 상태를 탈피하게 된다.

<표 2> 탈북 입국자 현황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탈 북 입국자	9명	8명	8명	52명	41명	56명	85명	71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탈 북 입국자	148명	312명	583명	1,139명	1,281명	1,894명	1,387명	7,074명

(자료 출처: 통일부)

셋째, 비정상적인 국제혼인 등에서 가끔 발생하는 경우인데,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동거 등에 의해 자녀를 출산했을 때, 자녀가 무국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1항에 의하면, “1. 출생한 당시에 父 또는 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父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父母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규정을 정하고 있다. 상기 조항이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의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출산하고, 미혼모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일시적 무국적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무국적자 문제는 ‘사실상 무국적자’ 보다는 ‘법적 무국적자’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법적 무국적자’에 대한 대책 수립도 향후 무국적자 문제를 처리하는데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실상 무국적자’를 감소시키려는 국가적, 국제적 기여와 함께 ‘법적 무국적자’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54. 9. 28 / 발효일 1960. 6. 6
당사국 수 52 / 대한민국 적용일 1962. 11. 20

모든 체약국들은

국제연합 헌장과 1948년 12월 28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인류가 차별 없이 기본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수차례 걸쳐서 무국적자에 대한 심심한 관심을 표명하였고 또한 이들 무국적자가 기본권리와 자유를 가능한 최대한도로 행사하도록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 왔음을 고려하고 피난민이기도 한 무국적자들만이 1951년 7월 28일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과 당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국적자들이 다수임을 고려하고,

국제적 협정에 의하여 무국적자의 지위를 규제 개선할 것이 요망됨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일반 규칙

제1조 (“무국적자”라는 용어의 정의)

1. 본 협약의 적용상 “무국적자”라는 용어는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본 협약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i) 국제연합 난민구제 고등판무관 이외의 국제연합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받고 있는 자로서 그러한 보호와 원조를 받

는 한에 있어서

(ii) 그들이 거주를 정한 국가의 관할당국에 의하여 그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를 향유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

(iii) 그들에 관하여 하기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a) 그들이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한 범죄를 규제하기 위하여 작성된 국제문서에 정의된 바의 그러한 범죄를 범한 사실

(b) 그들이 그 거주하는 국가에 입국하기 전에 당해국 외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사실

(c) 그들이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범한 사실

제2조(일반적 의무) 모든 무국적자는 그가 거주하는 국가에 대하여 특히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그 법령에도 복종할 의무를 진다.

제3조(불차별) 체약국은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의 차별 없이 본 협약의 규정을 무국적자에 적용한다.

제4조(종교)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서 신앙의 자유 및 자녀의 종교, 교육의 자유에 관하여 그 국민에게 허용하는 바와 적어도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허용한다.

제5조(본 협약과는 별도로 부여된 권리) 본 협약의 어느 규정도 당사국이 본 협약과는 별도로 무국적자에게 부여한 권리와 권익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못한다.

제6조(“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 본 협약의 적용상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는 특정의 개인이 만약 그가 무국적자가 아니라면 문제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제 요구조건(체류 또는 거주 기간과 조건에 관한 요건을 포함)이 무국적자에 의하여 충족되어야 하며 그 성질상 무국적자가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은 제외함을 의미한다.

제7조(상호주의의 면제)

1. 협약이 더욱 적절한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 체약국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허용한다.

2. 모든 무국적자는 3년 간의 거주 후에 체약국 영토 내에서 입법상의 상호

주의의 면제를 받는다.

3. 각 체약국은 본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상호주의 없이 무국적자에게 부여한 권리와 이익을 계속해서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무국적자들이 부여받은 바 이상의 권리와 이익을 상호주의 없이 무국적자에게 부여할 가능성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무국적자에게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인정할 가능성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본 협약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말한 권리와 이익 및 본 협약이 규정하지 않는 권리와 이익에 공히 적용된다.

제8조(예외적 조치의 면제) 외국인 또는 국민이었던 자의 신체나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취하여지는 예외적 조치에 관하여 체약국은 무국적자가 문제된 외국의 국적을 전에 가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자국의 법률로 인하여 본조에 표현된 일반원칙의 적용이 금지되는 체약국은 적당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무국적자를 위하여 면제를 허용한다.

제9조(잠정적 조치)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전시 또는 기타의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처하여 어떤 특정인의 경우에 있어서 그가 사실상 무국적자이며 또한 그에 관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잠정적 조치의 존속이 필요하다면 체약국이 결정할 때까지 국가안전에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잠정적 조치를 체약국이 취함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제10조(거주의 계속)

1. 무국적자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강제로 추방되고, 체약국 영토로 이전되어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강제체류기간은 그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무국적자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체약국 영토로부터 강제로 추방되고 본 협약의 발효일자 이전에 거주의 목적으로 당해국에 귀환한 경우에 그러한 강제추방 전후의 거주기간은, 연속적 거주가 요구되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하나의 연속적 기간으로 간주한다.

제11조(무국적 선원) 체약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원으로서 정식으로 근무하는 무국적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체약국은 그 영토 내의 그들의 정착 특히 타국에 있어서의 그들의 정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증명서 또는 임시 입국허가서의 발급에 관하여 동정적인 고려를 행한다.

제 2 장 법 적 지 위

제12조(신분)

1. 무국적자의 신분은 그 주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신분에 종속하는 무국적자의 기득 권리 특히 결혼에 부속되는 권리는 필요하다면 체약국의 법률이 요구하는 정식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당해국에 의하여 존중된다. 단, 문제의 권리는 만일 그가 무국적자가 되지 않았다면 당해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을 받는 권리어야 한다.

제13조(동산 및 부동산) 체약국은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이에 관한 기타의 권리 및 동산과 부동산의 차용 및 기타의 계약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여되는 바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허여한다.

제14조(예술상의 권리와 공업소유권) 발명, 의장이나 설계, 상표 및 상호와 같은 공업소유권 및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에 대한 권리 등의 보호에 관하여 무국적자는 그가 평소에 거주하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다른 체약국 영토에 있어서 그는 그가 평소에 거주하는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제15조(단체의 권리) 비정치적이며 비영리적인 단체와 노동조합에 관하여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허여한다.

제16조(제소권)

1. 무국적자는 모든 체약국 영토에 있어서 법원에 자유로이 제소할 수 있다.

2. 무국적자는 그가 평소에 거주하는 체약국 내에서 법률상의 원조와 소송비용보증금(Cautio Judicatum solvi)의 면제를 포함하여 제소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그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3. 무국적자는 그가 평소에 거주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의 평소의 거주지 국가의 국민에게 허여되는 대우를 허여받는다.

제 3 장 유급 고용

제17조(유임직업)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토 내에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유임직업에 종사할 권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허여한다.
2. 체약국은 유임직업에 관하여 모든 무국적자의 권리 특히 노동보충계획이나 이민계획에 의거하여 그 영토에 들어온 무국적자의 권리를 국민의 권리와 동일하게 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18조(자가영업) 체약국은 자신을 위하여 농업, 공업, 수예업 및 상업에 종사하며 또한 상업 및 공업회사를 설립할 권리에 관하여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는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허여한다.

제19조(자유직업) 각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며 그 국가의 관할 당국이 인정하는 면허장을 소지하고 또한 자유직업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허여한다.

제 4 장 복지

제20조(배급) 주민 전반에 적용되며 공급이 부족한 생산품의 전반적 분배를 규제하는 배급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국적자는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 받는다.

제21조(주택) 계약국은 주택에 관하여 그 문제가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공공당국의 통제에 복종하는 한에 있어서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하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한다.

제22조(학교교육)

1. 계약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 국민에게 하여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하여한다.
2. 계약국은 초등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에 관하여 특히 연구의 편의, 외국학 교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등의 인정, 학비면제 및 장학금의 급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하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하여한다.

제23조(공공구호) 계약국은 자국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공공구호의 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하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한다.

제24조(노동법률과 사회보장)

1. 계약국은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국민에게 하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한다.
 - (a) 그러한 사항이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행정당국의 통제에 복종하는 한에 있어서 보상(보상의 일부를 형성하는 가족수당을 포함), 작업 시간, 초과근무, 유급공휴일, 가내작업의 제한, 최저고용연령, 견습과 훈련, 부인노동과 유년노동 및 단체교섭 이익의 향유
 - (b) 사회보장(취업중의 부상, 취업과 관련된 질병, 산모, 외병, 불구, 노령, 사망, 실업가족의 책임 및 국내법령에 의하여 사회보장계획의 보호를

받는 기타의 불의의 사고 등), 단 아래의 제한에 따라야 한다.

(i) 취득한 권리와 취득 수속 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ii) 거주지국의 국내 법령은 공공기금에서 전적으로 지불하는 급부나 또는 급부의 부분에 관하여 또한 통상연금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된 기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2. 취업 중의 상해나 직업과 관련된 질병에 기인되는 무국적자의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수혜자의 거주지가 체약국 영토 외부에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체약국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 또는 취득 수속 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체결된 또는 장차에 체결될 협정의 이익을 무국적자에게 부여한다. 단, 다만 문제의 협정에 대한 서명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요건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체약국은 어느 때에라도 전기의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에 시행될 유사한 협정의 이익을 가능한 한 무국적자에게 부여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5장 행정적 조치

제25조(행정적 원조)

1. 무국적자의 권리행사가 그가 의뢰할 수 없는 외국당국의 원조를 통상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영토에 그가 거주하는 체약국은 그 자체의 당국이 그러한 원조를 그에게 부여하도록 조치한다.
2. 제1항에서 말한 당국은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국가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교부되는 문서 또는 증명서를 무국적자에게 발급하거나 또는 그 감독하에 발급되도록 한다.
3. 전기와 같이 교부한 문서 또는 증명서는 외국인의 국가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교부되는 정식문서에 대신하여 효력을 가지며

또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빙성을 갖는다.

4. 궁핍한 자에게 허여할 수 있는 특별대우를 조건으로 하여 본 규정에서 말한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수료는 적절한 금액이며 또한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 국민에게 과하는 그것과 동액이어야 한다.

5. 본 조의 제규정은 제27조 및 제28조를 해하지 못한다.

제26조(이전의 자유) 각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영토 내에서 그 거주지를 선택하며 또한 자유로이 이전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27조(신원증명서) 체약국은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그 영토 내의 무국적자에게 신원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8조(여행증명서)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상당한 이유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한 그 영토 외로의 여행목적을 위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며 또한 본 협정 부속서의 제규정은 이러한 문서에 관하여 적용된다. 체약국은 그 영토 내의 다른 어떠한 무국적자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또한 체약국은 특히 그들의 합법적인 거주지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그 영토 내의 무국적자에 대한 이러한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행한다.

제29조(재정상의 부과금)

1. 체약국은 유사한 사정하에 국민에게 부과하는 또는 장차에 부과할 것 이외의 또는 그보다 고율의 관세, 수수료 또는 조세 등 여하한 명목의 것이라도 이를 무국적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2. 전항의 어떠한 규정도 신원증명서를 포함한 행정적 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데 대한 수수료에 관한 법령을 무국적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제30조(재산의 이전)

1. 체약국은 무국적자가 그 영토 내에 반입한 재산을 정착의 목적으로 입국

허가를 받은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그 법령에 따라서 허가한다.

2. 체약국은 무국적자가 그 위치 여하를 불문하며 또한 그들의 입국이 허가된 타국에 있어서 그들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이전허가를 신청하는 데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31조(추방)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토에 체재하는 무국적자를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이유 이외에는 추방하지 못한다.
2. 이러한 무국적자의 추방은 타당한 법률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진다. 상당한 국가안전상의 이유가 다른 조치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국적자는 자신을 소명할 증거를 제시하며 또한 관할당국 또는 관할당국이 특별히 지정한 자에게 상소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그 대리인을 세우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3. 체약국은 이러한 무국적자가 타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 허가를 구할 수 있는 합당한 기간을 허여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 동안 동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32조(귀화) 체약국은 무국적자의 동화 및 귀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체약국은 귀화절차를 신속화하며 또한 이러한 절차의 수수료 및 비용은 가능한 한 인하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제 6 장 최종 조항

제33조(국내 법령의 통고)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체약국이 본 협정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할 법령을 통고한다.

제34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 중 일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제35조(서명, 비준, 가입)

1. 본 협약은 서명을 위하여 국제연합본부에 1955년 12월 31일까지 개방한다.

2. 본 협약은 하기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a) 국제연합 회원국가
 - (b)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국가 및
 - (c) 국제연합 총회가 서명 또는 가입초청을 발송한 국가
3.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4. 본 협약은 본조 제2항에 열거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지역적 적용 조항)

1. 어느 국가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국제관계상 당해 국가가 그 국제 관계에 책임을 지는 전체 또는 그 일부에 본 협약이 적용됨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할 때에 발효한다.
2. 그 후에는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통고함으로써 그러한 적용을 행 하며 또한 이러한 적용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이 통고 접수일의 90일 후 또는 관계국에 대하여 본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의 양자 중 늦은 쪽을 취 한다.
3. 본 협약이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적용되지 않는 영토에 관하여는 관계 각 국가는 헌법상의 이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영토국 정부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그러한 영토에 대하여 본 협약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제37조(연방 조항) 연방 또는 비단일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래의 규정을 적용 한다.

- (a) 연방 입법당국의 입법권에 속하는 본 협약 조문에 관하여 연방정부의 의무는 그 정도까지 연방국가 아닌 당사국의 의무와 동일하다.
- (b) 연방의 헌법제도상 입법행위를 취할 채무가 없는 하방(下邦)주 또는 현 의 입법권 내에 속하는 본 협약의 제조항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가능한 한 단시일 내에 그러한 조항을 국가의 관계당국에 호의적인 권고와 함께 통고한다.
- (c) 본 협약의 연방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발송된 다른 체약

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 본 협약의 특정규정에 관하여 동 규정이 입법 또는 기타의 행위에 의하여 효력이 부여된 범위를 표시하는 연방국의 법률 및 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38조(유보)

1. 체약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본 협약의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1항과 제33조 내지 제42조 이외의 조항에 대하여 유보를 행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유보를 행하는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유보의 철회에 관한 통고를 행함으로써 언제든지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39조(효력의 발생)

1. 본 협약은 여섯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의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여섯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본 협약을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그러한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의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폐기)

1.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이러한 폐기통고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 후에 관계 체약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3. 제36조에 의하여 선언 또는 통고를 행한 체약국은 그 후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본 협약이 동 사무총장에 의하여 통고가 접수된 일자의 1년 후에 모든 영토에 적용함을 중지한다는 선언을 행할 수 있다.

제41조(개정)

1.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본 협약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총회는 전기의 요청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할 때에는 이를 권고한다.

제42조(국제연합 사무총장의 통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

과 제35조에 규정한 비가맹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a) 제35조에 의거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36조에 의거한 선언 및 통고
- (c) 제38조에 의거한 유보 및 철회
- (d) 제39조에 의거한 본 협약의 발효일자
- (e) 제40조에 의거한 폐기 및 통고
- (f) 제41조에 의거한 개정의 요청

이상의 증거로써 하기의 서명자는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각자의 정부를 위하여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4년 9월 28일 뉴욕에서 단일본으로 작성되었으며 그의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또한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되고 그 인증 등본은 모든 국제연합가맹국과 제35조에 규정된 비가맹국에 교부한다.

부 속 서

- 제1항 1. 본 협약 제28조에 규정한 여행증명서는 1954년 9월 28일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소지자가 무국적자임을 표시한다.
2. 동 증명서는 적어도 2개 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중 하나가 영어나 불어이어야 한다.
3. 체약국은 본 부속서에 첨부된 여행증명서 양식의 채택이 요망됨을 고려한다.
- 제2항 교부국의 통용되는 규정에 의거하여 아동은 부모 또는 특별한 경우에 다른 성인의 여행증명서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항 증명서의 교부에 대하여 과하는 수수료는 내국민의 여권에 대한 최저수수료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제4항 특별 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서는 가능한 한 최다수의 국가에 대하여 유효하도록 작성한다.

- 제5항 증명서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유효기간을 갖도록 한다.
- 제6항 1. 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은 그 소지자가 다른 영토에 합법적인 거주를 정하지 않고 증명서 교부당국이 있는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 전기한 교부당국이 처리할 사무이다. 신 증명서의 교부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구 증명서를 교부한 당국이 처리할 사무이다.
2.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은 자국의 정부가 교부한 여행증명서의 효력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3. 체약국은 자국 영토 내의 합법적인 거주자가 아니며 그 합법적인 거주지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여행증명서의 효력의 갱신 또는 연장 또는 신 증명서의 교부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 제7항 체약국은 본 협약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부된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 제8항 무국적자가 가려고 원하는 국가의 관할당국은 그의 입국을 허가한 경우 및 사증을 요하는 경우에 동 무국적자가 그 소지자인 증명서에 사증을 첨부한다.
- 제9항 1. 체약국은 최종행선지 영토까지의 사증을 취득한 무국적자에게 통과사증을 교부할 것을 약속한다.
2. 전기 사증의 교부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의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로써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제10항 출국사증, 입국사증 또는 통과사증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인 여권사증에 대한 수수료의 최저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11항 무국적자가 다른 체약국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정한 경우에 신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책임은 제28조의 규정과 조건에 의거하여 무국적자가 신청할 권리가 있는 영토의 관할당국에 있다.
- 제12항 신 증명서를 교부하는 당국은 구 증명서를 회수하여 동 증명서를 반환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국에 이를 반환한다.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 증명서를 회수 파기한다.
- 제13항 1. 본 협약 제28조에 의거하여 교부된 여행증명서는 반대되는 기재사항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언제든지 교부국 영토 내에 재입국할 권리를 소지자에게 허용한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소지자가 증명서를 교부하는 국가에 귀환하는 기간은 무국적자가 여행할 것을 신청한 국가가 재입국할 권리를 부여하는 여행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전기 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약국은 증명서 소지자에게 그 영토로부터의 출국 또는 영토에의 귀환에 관하여 규정될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항 오직 제13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부속서의 제 규정은 체약국 영토에의 입국, 통과, 거주 및 정주와 동 영토로부터의 출국에 대한 조건을 규제하는 법령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항 증명서의 교부 또는 이의 기재는 소지자의 신분(특히 국적에 관하여)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제16항 증명서의 교부는 소지자에게 교부국의 외교 또는 영사당국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결코 부여하지 않으며 또한 전기의 당국에 대하여 보호의 권리를 사실상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여행 증명서의 양식

증명서는 소책자형(약 15×10센티미터의 크기)으로 하며 화학적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말소 또는 변경을 용이하게 간취(看取)할 수 있도록 인쇄하고 각 면마다 연속적으로 교부국의 국어로써 “1954년 9월 28일자 협약”이라는 말을 인쇄할 것을 권고한다.

소책자의 표지

여행증명서

(“1954년 9월 28일자 협약”)

제 호

(1)

여행증명서

(1954년 9월 28일 협약)

본 증명서는 그 효력을 연장 또는 갱신하지 않는 한에 효력을 상실한다.

성명

세례명

동반 소아의 수

1. 본 증명서는 소지자에게 내국민 여권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게 할 목적으로써만 교부되며 또한 결코 소지자의 국적을 변경하지 않는다.
2. 소지자는 후부(後部)에 더 늦은 일자가 명기되지 않는 한년월일 또는전에국(증명서 교부당국의 국가)으로 귀환할 것을 허가한다(소지자가 귀환하도록 허가된 기간은 소지자가 여행할 것을 요청한 국가가 재입국의 권리를 부여하는 여행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소지자가 이 증명서를 교부한 국가 이외의 국가에 거주를 정하는 경우에 다시 여행할 것을 원하면 그는 거주지국가의 관할당국에 신 증명서의 교부를 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구 여행증명서는 신 증명서를 교부하는 당국에 의하여 회수되며 그것을 교부한 당국에 반환한다)(주 1).

(본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면으로 되어 있음)

주 1) 괄호 안의 구절은 정부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삽입한다.

(2)

출생지 및 생년월일

직업

현주소

* 처의 본명 및 세례명

*부(夫)의 성명 및 세례명

신원사항

신장

모발

안색(眼色)

코
 안면의 형상
 안색(顔色)
 특징

소지자와 동반 자녀

성명	세례명	출생지 및 생년월일	성별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말소한다.

(본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면으로 되어 있음)

(3)

소지자의 사진 및 교부당국의 소인(消印)

소지자의 지문(필요한 경우)

소지자의 서명

(본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면으로 되어 있음)

(4)

1. 본 증명서는 하기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

2. 이 증명서를 교부하는 데 증거가 되는 서류:

.....

교부지

일 자

증명서 교부당국의 서명 및 소인:

지불수수료 :

(본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면으로 되어 있음)

(5~6)

효력의 연장 또는 갱신

지불수수료 : 부터

..... 까지

조처지(措處地) : 일자

증명서의 효력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당국의 서명 및 소인

(본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면으로 되어 있음)

(7~32)

(사증)

본 증명서 소지자의 성명을 각 사증마다 기재하여야 한다.

(본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면으로 되어 있음)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PREAMBLE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Considering that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pproved on 10 December 1948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have affirmed the principle that human beings shall enjoy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without discrimination,

Considering that the United Nations has, on various occasions, manifested its profound concern for stateless persons and endeavoured to assure stateless persons the widest possible exercise of thes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Considering that only those stateless persons who are also refugees are covered by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 28 July 1951, and that there are many stateless persons who are not covered by that Convention,

Considering that it is desirable to regulate and improve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by an international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 of the term “stateless person”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stateless person” means a person who is not considered as a national by any State under the operation of its law.
2.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 (i) To persons who are at present receiving from organs or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other than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protection or assistance so long as they are receiving such protection or assistance;
 - (ii) To persons who are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have taken residence as hav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which are attached to the possession of the nationality of that country;
 - (iii) To persons with respect to whom there are serious reasons for considering that:
 - (a) They have committed a crime against peace, a war crime, or a crime against humanity, as defined in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drawn up to make provisions in respect of such crimes;
 - (b) They have committed a serious non-political crime outside the country of their residence prior to their admission to that country;
 - (c) They have been guilty of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2. General obligations

Every stateless person has duties to the country in which he finds himself,

which require in particular that he conform to its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to measures taken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rticle 3. Non-discrimination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stateless persons without discrimination as to race, religion or country of origin.

Article 4. Religion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within their territories treatment at least as favourable as that accorded to their nationals with respect to freedom to practise their religion and freedom as regards the religious education of their children.

Article 5. Rights granted apart from this Convention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impair any rights and benefits granted by a Contracting State to stateless persons apart from this Convention.

Article 6. The term "in the same circumstances"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in the same circumstances" implies that any requirements (including requirements as to length and conditions of sojourn or residence) which the particular individual would have to fulfil for the enjoyment of the right in question, if he were not a stateless person, must be fulfilled by him, with the exception of requirements which by their nature a stateless person is incapable of fulfilling.

Article 7. Exemption from reciprocity

1. Except where this Convention contains more favourable provisions, a Contracting State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the same treatment as is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2. After a period of three years' residence, all stateless persons shall enjoy

exemption from legislative reciprocity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s.

3.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continue to accord to stateless persons the rights and benefits to which they were already entitled, in the absence of reciprocity, at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at State.
4.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consider favourably the possibility of according to stateless persons, in the absence of reciprocity, rights and benefits beyond those to which they are entitled according to paragraphs 2 and 3, and to extending exemption from reciprocity to stateless persons who do not fulfil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s 2 and 3.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apply both to the rights and benefits referred to in articles 13, 18, 19, 21 and 22 of this Convention and to rights and benefits for which this Convention does not provide.

Article 8. Exemption from exceptional measures

With regard to exceptional measures which may be taken against the person, property or interests of nationals or former nationals of a foreign State,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apply such measures to a stateless person solely on account of his having previously possessed the nationality of the foreign State in question. Contracting States which, under their legislation, are prevented from applying the general principle expressed in this article shall, in appropriate cases, grant exemptions in favour of such stateless persons.

Article 9. Provisional measures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vent a Contracting State, in time of war or other grave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from taking provisionally measures which it considers to be essential to the national security in the case of a particular person, pending a determination by the Contracting State that that person is in fact a stateless person and that the continuance of

such measures is necessary in his case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Article 10. Continuity of residence

1. Where a stateless person has been forcibly displac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removed to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and is resident there, the period of such enforced sojourn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lawful residence within that territory.
2. Where a stateless person has been forcibly displac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from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and has,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returned there for the purpose of taking up residence, the period of residence before and after such enforced displacement shall be regarded as one uninterrupted period for any purposes for which uninterrupted residence is required.

Article 11. Stateless seamen

In the case of stateless persons regularly serving as crew members on board a ship flying the flag of a Contracting State, that State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their establishment on its territory and the issue of travel documents to them or their temporary admission to its territory particularly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ir establishment in another country.

CHAPTER II JURIDICAL STATUS

Article 12. Personal status

1. The personal status of a stateless person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of his domicile or, if he has no domicile, by the law of the country of his residence.
2. Rights previously acquired by a stateless person and dependent on personal status, more particularly rights attaching to marriage, shall be

respected by a Contracting State, subject to compliance, if this be necessary, with th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law of that State, provided that the right in question is one which would have been recognized by the law of that State had he not become stateless.

Article 13.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a stateless person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as regards the acquisition of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and other rights pertaining thereto, and to leases and other contracts relating to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Article 14. Artistic rights and industrial property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such as inventions, designs or models, trade marks, trade names, and of rights in literary, artistic and scientific works, a stateless person shall be accorded in the country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the same protection as is accorded to nationals of that country.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State, he shall be accorded the same protection as is accorded in that territory to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Article 15. Right of association

As regards non-political and non-profit-making associations and trade unions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Article 16. Access to courts

1. A stateless person shall have free access to the courts of law on the territory of all Contracting States.

2. A stateless person shall enjo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the same treatment as a national in matters pertaining to access to the courts, including legal assistance and exemption from *cautio judicatum solvi*.
3. A stateless person shall be accorded in the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2 in countries other than that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the treatment granted to a national of the country of his habitual residence.

CHAPTER III GAINFUL EMPLOYMENT

Article 17. Wage-earning employment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as regards the right to engage in wage-earning employment.
2.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ssimilating the rights of all stateless persons with regard to wage-earning employment to those of nationals, and in particular of those stateless persons who have entered their territory pursuant to programmes of labour recruitment or under immigration schemes.

Article 18. Self-employment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a stateless person lawfully in their territory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as regards the right to engage on his own account in agriculture, industry,

handicrafts and commerce and to establish commercial and industrial companies.

Article 19. Liberal professions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who hold diplomas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State, and who are desirous of practising a liberal profession,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CHAPTER IV WELFARE

Article 20. Rationing

Where a rationing system exists, which applies to the population at large and regulates the general distribution of products in short supply, stateless persons shall be accorded the same treatment as nationals.

Article 21. Housing

As regards housing, the Contracting States, in so far as the matter is regulated by laws or regulations or is subject to the control of public authorities,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Article 22. Public education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the same treatment as is accorded to nationals with respect to elementary education.
2.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with respect to education other than elementary education and, in particular, as regards access to studies, the recognition of foreign school certificates, diplomas and degrees, the remission of fees and charges and the award of scholarships.

Article 23. Public relie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he same treatment with respect to public relief and assistance as is accorded to their nationals.

Article 24. Labour legislation and social security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he same treatment as is accorded to nationals in respect of the following matters:
 - (a) In so far as such matters are governed by laws or regulations or are subject to the control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remuneration, including family allowances where these form part of remuneration, hours of work, overtime arrangements, holidays with pay, restrictions on home work, minimum age of employment, apprenticeship and training, women's work and the work of young persons, and the enjoyment of the benefits of collective bargaining;
 - (b) Social security (legal provisions in respect of employment injury, occupational diseases, maternity, sickness, disability, old age, death, unemployment, family responsibilities and any other contingency which, according to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is covered by a social security scheme), subject to the following limitations:
 - (i) There may be appropriate arrangements for the maintenance of acquired rights and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 (ii)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f the country of residence may prescribe special arrangements concerning benefits or portions of benefits which are payable wholly out of public funds, and concerning allowances paid to persons who do not fulfil the contribution conditions prescribed for the award of a normal pension.
- 2. The right to compensation for the death of a stateless person resulting from employment injury or from occupational disease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fact that the residence of the beneficiary is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 3.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tend to stateless persons the benefits of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m, or which may be concluded between them in the future, concerning the maintenance of acquired rights and rights in the process of acquisition in regard to social security, subject only to the conditions which apply to nationals of the States signatory to the agreements in question.
- 4. The Contracting States wi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extending to stateless persons so far as possible the benefits of similar agreements which may at any time be in force between such Contracting States and non-contracting States.

CHAPTER V ADMINISTRATIVE MEASURES

Article 25. Administrative assistance

- 1. When the exercise of a right by a stateless person would normally require the assistance of authorities of a foreign country to whom he cannot have recourse, the Contracting State in whose territory he is residing shall arrange that such assistance be afforded to him by their own authorities.

2. The authority or authoritie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deliver or cause to be delivered under their supervision to stateless persons such documents or certifications as would normally be delivered to aliens by or through their national authorities.
3. Documents or certifications so delivered shall stand in the stead of the official instruments delivered to aliens by or through their national authorities and shall be given credence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4. Subject to such exceptional treatment as may be granted to indigent persons, fees may be charged for the services mentioned herein, but such fees shall be moderate and commensurate with those charged to nationals for similar services.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rticles 27 and 28.

Article 26. Freedom of movement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lawfully in its territory the right to choose their place of residence and to move freely within its territory, subject to any regulations applicable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Article 27. Identity papers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ssue identity papers to any stateless person in their territory who does not possess a valid travel document.

Article 28. Travel documents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ssue to stateless person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ravel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travel outside their territory, unless compelling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otherwise require, and the provisions of the schedule to this Convention shall apply with respect to such documents. The Contracting States may issue

such a travel document to any other stateless person in their territory; they shall in particular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the issue of such a travel document to stateless persons in their territory who are unable to obtain a travel document from the country of their lawful residence.

Article 29. Fiscal charges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impose upon stateless persons duties, charges or taxes, of any description whatsoever, other or higher than those which are or may be levied on their nationals in similar situations .
2. Nothing in the above paragraph shall prevent the application to stateless person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charges in respect of the issue to aliens of administrative documents including identity papers.

Article 30. Transfer of assets

1. A Contracting State shall, in conformity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permit stateless persons to transfer assets which they have brought into its territory, to another country where they have been admitted for the purposes of resettlement.
2. A Contracting State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the application of stateless persons for permission to transfer assets wherever they may be and which are necessary for their resettlement in another country to which they have been admitted.

Article 31. Expulsion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expel a stateless person lawfully in their territory save on ground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2. The expulsion of such a stateless person shall be only in pursuance of a decision reached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of law. Except where compelling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otherwise require, the stateless person shall be allowed to submit evidence to clear himself, and to appeal to and be represented for the purpose before competent authority or a

person or persons specially design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3.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llow such a stateless person a reasonable period within which to seek legal admission into another country. The Contracting States reserve the right to apply during that period such internal measures as they may deem necessary.

Article 32. Naturalization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s far as possible facilitate the assimilation and naturalization of stateless persons. They shall in particular make every effort to expedite naturalization proceedings and to reduce as far as possible the charges and costs of such proceedings.

CHAPTER VI FINAL CLAUSES

Article 33. Information on national legislation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communicate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laws and regulations which they may adopt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rticle 34.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between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lating to its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which cannot be settled by other means, shall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t the request of any on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rticle 35.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until 31 December 1955.
2. It shall be open for signature on behalf of:
 - (a) Any Stat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 (b) Any other State invited to attend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and
 - (c) Any State to which an invitation to sign or to accede may be address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3. It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4. It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the St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6. Territorial application clause

1. Any State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declare that this Convention shall extend to all or any of the territories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which it is responsible. Such a declaration shall take effect when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the State concerned.
2. At any time thereafter any such extension shall be mad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shall take effect as from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y of receipt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is notification, or a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State concerned, whichever is the later.
3. With respect to those territories to which this Convention is not extended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each State concerned shall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aking the necessary steps in order to extend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o such territories, subject, where necessary for constitutional reasons, to the consent of the Governments of such territories.

Article 37. Federal clause

In the case of a Federal or non-unitary State,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 (a) With respect to those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at come within the legislative jurisdiction of the federal legislative authority, the obligations of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to this extent be the same as those of Parties which are not Federal States;
- (b) With respect to those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at come within the legislative jurisdiction of constituent States, provinces or cantons which are not,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Federation, bound to take legislative action,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bring such articles with a favourable recommendation to the notice of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States, provinces or cantons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 (c) A Federal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shall, at the request of any other Contracting State transmitted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upply a statement of the law and practice of the Federation and its constituent units in regard to any particular provision of the Convention showing the extent to which effect has been given to that provision by legislative or other action.

Article 38. Reservations

1.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any State may make reservations to articles of the Convention other than to articles 1, 3, 4, 16 (1) and 33 to 42 inclusive.
2. Any State making a reserv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at any time withdraw the reservation by a communication to that effect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9. Entry into force

1.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ninetieth day following the day of deposit of the six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or acceding to the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six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ninetieth day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by such State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40. Denunciation

1. Any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at any time by a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Such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for the Contracting State concerned one year from the date upon which it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Any State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or notification under article 36 may, at any time thereafter, by a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clare tha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extend to such territory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41. Revision

1. Any Contracting State may request revision of this Convention at any time by a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shall recommend the steps, if any, to be taken in respect of such request.

Article 42. Notifications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non-member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35:

- (a) Of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
- (b) Of declarations and notific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 (c) Of reservations and withdrawa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 (d) Of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will come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9;

- (e) Of denunciations and notific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 (f) Of request for revi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In faith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have signed this Convention on behalf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Done at New York, this twenty-eighth day of Septembe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ifty-four, in a single copy, of which the English, French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and which shall remain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and certified true copies of which shall be delivered to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the non-member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35.

Schedule

Paragraph 1

1. The travel document referred to in article 28 of this Convention shall indicate that the holder is a stateless person under the terms of the Convention of 28 September 1954.
2. The document shall be made out in at least two languages, one of which shall be English or French.
3. The Contracting States will consider the desirability of adopting the model travel document attached hereto.

Paragraph 2

Subject to the regulations obtaining in the country of issue, children may be included in the travel document of a parent or,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of another adult.

Paragraph 3

The fees charged for issue of the document shall not exceed the lowest scale of charges for national passports.

Paragraph 4

Save in special or exceptional cases, the document shall be made valid for the largest possible number of countries.

Paragraph 5

The document shall have a validity of not less than three months and not more than two years.

Paragraph 6

1. The renewal or extension of the validity of the document is a matter for the authority which issued it, so long as the holder has not established lawful residence in another territory and resides lawfully in the territory of the said authority. The issue of a new document is, under the same conditions, a matter for the authority which issued the former document.
2.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may be authorized to extend, for a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the validity of travel documents issued by their Governments.
3.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renewing or extending the validity of travel documents or issuing new documents to stateless persons no longer lawfully resident in their territory who are unable to obtain a travel document from the country of their lawful residence.

Paragraph 7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document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of this Convention.

Paragraph 8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to which the stateless person desires to proceed shall, if they are prepared to admit him and if a visa is required, affix a visa on the document of which he is the holder.

Paragraph 9

1. 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to issue transit visas to stateless persons who have obtained visas for a territory of final destination.
2. The issue of such visas may be refused on grounds which would justify refusal of a visa to any alien.

Paragraph 10

The fees for the issue of exit, entry or transit visas shall not exceed the lowest scale of charges for visas on foreign passports.

Paragraph 11

When a stateless person has lawfully taken up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the responsibility for the issue of a new document,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rticle 28 shall be tha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territory, to which the stateless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pply.

Paragraph 12

The authority issuing a new document shall withdraw the old document and shall return it to the country of issue, if it is stated in the document that it should be so returned; otherwise it shall withdraw and cancel the document.

Paragraph 13

1. A travel document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 of this Convention shall, unless it contains a statement to the contrary, entitle the holder to re-enter the territory of the issuing State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of its validity. In any case the period during which the holder may return to

the country issuing the document shall not be less than three months, except when the country to which the stateless person proposes to travel does not insist on the travel document according the right of re-entry.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sub-paragraph, a Contracting State may require the holder of the document to comply with such formalities as may be prescribed in regard to exit from or return to its territory.

Paragraph 14

Subject only to the terms of paragraph 13, the provisions of this Schedule in no way affect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conditions of admission to, transit through, residence and establishment in, and departure from,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Paragraph 15

Neither the issue of the document nor the entries made thereon determine or affect the status of the holder, particularly as regards nationality.

Paragraph 16

The issue of the document does not in any way entitle the holder to the protection of the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issue, and does not ipso facto confer on these authorities a right of protection.

MODEL TRAVEL DOCUMENT

It is recommended that the document be in booklet form (approximately 15×10 centimetres), that it be so printed that any erasure or alteration by chemical or other means can be readily detected, and that the words “Convention of 28 September 1954” be printed in continuous repetition on each page, in the language of the issuing country.

(COVER OF BOOKLET)
TRAVEL DOCUMENT
(Convention of 28 September 1954)

No

(1)

TRAVEL DOCUMENT
(Convention of 28 of 1954)

This document expires on unless its validity is extended or renewed.

Name

Forename(s)

Accompanied by..... child (children).

1. This document is issued solely with a view to providing the holder with a travel document which can serve in lieu of a national passport. It is without prejudice to and in no way affects the holder's nationality.
2. The holder is authorized to return to[state here the country whose authorities are issuing the document] on or before..... unless some later date is hereafter specified. [The period during which the holder is allowed to return must not be less than three months except when the country to which the holder proposes to travel does not insist on the travel document according the right of re-entry.]
3. Should the holder take up residence in a country other than that which issued the present document, he must, if he wishes to travel again, apply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his country of residence for a new document. [The old travel document shall be withdrawn by the authority issuing the new document and returned to the authority which issued it] 1

(This document contains 32 pages, exclusive of cover)

¹ The sentence in brackets to be inserted by Governments which so desire.

(2)

Place and date of birth
Occupation
Present residence
* Maiden name and forename(s) of wife
* Name and forename(s) of husband

Description

Height
Hair
Colour of eyes
Nose
Shape of face
Complexion
Special peculiarities

Children accompanying holder

Name	Forename(s)	Place and date of birth	Sex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strike out whichever does not apply

(This document contains 32 pages, exclusive of cover)

(3)

Photograph of holder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Finger-prints of holder (if required)

Signature of holder

.....

(This document contains 32 pages, exclusive of cover)

(4)

1. This document is valid for the following countries :

.....
.....
.....
.....

2. Document or documents on the basis of which the present document is issued.

.....
.....
.....

Issued at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ty

issuing the document :

Fee paid :

(This document contains 32 pages, exclusive of cover)

(5-6)

Extension or renewal of validity

Fee paid : From

To

Done at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ty

extending or renewing the validity

of the document :

(This document contains 32 pages, exclusive of cover)

(7-32)

Visas

The name of the holder of the document must be repeated in each visa.

(This document contains 32 pages, exclusive of cover)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61. 8. 30 / 발효일 1975. 12. 13

당사국 수 23 / 대한민국 미가입

체약국은 1954년 12월 4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896호(IX)에 의거하여 활동하여, 국제협약을 통한 무국적자의 감축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1. 체약국은 자국 영토에서 출생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국적을 가질 수 없는 자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 국적은 다음과 같이 부여된다.
- (a) 법률의 적용에 의하여 출생시 또는,
 - (b) 국내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자가 직접 또는 대리로 담당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대하여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본 항 (b)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체약국은 국내법에 규정된 연령과 조건에 따라 법률의 적용을 통하여도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
2. 체약국은 이 조 제1항 (b)에 따라 다음 조건의 하나 이상을 전제로 하여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
- (a) 이 신청은 18세 이상 21세 이하 사이에서 체약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해당자에게는 별도의 법적 허가를 얻지 않고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 부여되어야 한다.
 - (b)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의 5년이나 통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약국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자가 체약국 영토 내에서 거주하

였을 것.

(c) 해당자가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형사범죄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지 않았을 것.

(d) 해당자가 이제까지 무국적자였을 것.

3. 이 조 제1항 (b)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 영토에서 적출로 출생하였고 모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졌을 경우, 그 어린이가 다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면 출생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다.

4. 체약국 영토 내에서 출생하였으나 국적신청 연령이 도과하였거나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국적자로 되는 자로서 만약 부모 중 어느 일방이 그의 출생시 위에 지적된 체약국 국적자였다면, 체약국은 그에게 국적을 부여한다. 체약국은 달리는 국적을 가질 수 없고 그 나라 영토에서 출생했으나 신청할 연령이 지났거나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체약국의 국적을 얻을 수 없는 자에게는 만약 그가 출생할 시 그의 부가 체약국의 국적을 가졌을 경우 그 나라 국적을 준다. 출생시 그의 부모가 동일한 국적을 갖고 있지 않고 있을 경우 해당자가 부모 또는 모 어느 편의 국적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국적부여 신청이 필요한 경우 그 신청은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또는 대리로 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 신청은 거부되지 아니한다.

5. 체약국은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조건의 하나 이상을 전제로 하여 국적을 부여한다.

(a) 신청자가 체약국이 23세 이상으로 규정한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신청할 것.

(b) 해당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체약국이 3년 이내로 정한 기간 동안 체약국 영토에 거주하였을 것.

(c) 해당자가 이제까지 국적이 없었을 것.

제2조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발견된 기아는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체약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 의하여 그 영토 내에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협약에 따른 체약국의 의무를 결정할 목적상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의 출생은 그 선박의 기국 또는 그 항공기 등록국의 영토 내에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1. 체약국은 체약국 영토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나 달리는 국적을 가질 수 없는 자에게 만약 그가 출생할 당시 부모의 어느 일방이 체약국의 국적을 가졌었다면 그에게 국적을 부여하여야 한다. 만약 그의 출생 당시 그의 부모가 동일한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경우 해당자가 부 또는 모 어느 편의 국적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이 항의 규정에 따른 국적은 다음과 같이 부여된다.

(a) 법률의 적용에 따라 출생시.

(b) 국내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자가 직접 또는 대리로 담당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신청은 거부될 수 없다.

2. 체약국은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전제로 하여 국적을 부여한다.

(a) 신청자가 체약국이 23세 이상으로 정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신청할 것.

(b) 해당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체약국이 3년 이내로 정한 기간 동안 체약국 영토 내에 계속 거주하였을 것.

(c) 해당자가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없었을 것.

(d) 해당자가 이제까지 국적이 없었을 것.

제5조 1. 혼인, 혼인종료, 적출인정, 인지 또는 입양으로 인한 신분변경으로 인하여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국적상실이 초래되는 경우, 그러한 상실은 타국 국적의 보유 또는 취득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2. 비적출자가 부의 인지의 결과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그에게는 담당기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함으로써 국적을 회복할 기회가 부여된다. 이 때의 신청조건은 이 협약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조건보다 엄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체약국의 법률이 그 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자의 배우자나 자도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그러한 상실은 그들이 타국 국적

을 보유 또는 취득함을 조건으로 한다.

제7조 1. (a) 체약국의 법률이 국적의 상실 또는 포기를 규정하고 있어도 해당자가 다른 국적을 보유 또는 취득하지 아니하는 한 국적의 포기가 상실을 결과하지 아니한다.

(b) 이 항 (a)의 적용이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1948년 12월 10일에 승인된 세계인권선언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원칙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이 항 (a)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외국에 귀화하고자 하는 체약국 국민이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취득을 보장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의 국적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체약국 국민은 출국, 해외거주, 등록불이행, 기타 유사한 이유로 국적을 상실하여 무국적자가 되지 아니한다.

4. 귀화자가 7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체약국의 법률로 규정된 기간 동안 해외에 거주하면서 그의 국적 보유의사를 관계기관에 명백히 하지 않았을 경우 그의 국적은 상실될 수 있다.

5. 해외에서 출생한 체약국 국민이 성년에 도달한 지 1년 이후에도 그 나라 국적을 보유하느냐에 관하여 체약국 법률은 당시 그 나라 영토에 거주하느냐 또는 관계기관에 등록하였느냐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6.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국적 상실이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더라도, 체약국 국적의 상실로 무국적자가 될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8조 1. 체약국의 국적 박탈로 무국적자가 될 경우, 체약국은 그 국적을 박탈할 수 없다.

2. 이 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체약국의 국적을 박탈당할 수 있다.

(a) 제7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국적 상실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

(b) 허위진술 또는 사기로 취득한 국적인 경우.

3.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이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 다음과 같은 경우의 국적 박탈권을 기존의 국내법에 명시하고 있다면 그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

(a) 체약국에 대한 충성의무와 모순되게

(i) 체약국에 명시적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타국에 역무를 제공하였거나, 계속하고 있거나, 또는 타국으로부터 보수를 받았거나, 계속 받고 있는 자.

(ii) 체약국의 중대한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자.

(b) 타국에 대한 충성을 선서하였거나, 공식 선언을 한 경우, 또는 체약국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자신의 결정에 관하여 명백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

4. 체약국은 이 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된 박탈권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법률은 해당자에게 법원 또는 다른 독립된 기관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

제9조 체약국은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어느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그들의 국적을 박탈시킬 수 없다.

제10조 1. 영토의 이양을 규정하는 체약국간의 모든 조약은 이양의 결과 무국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체약국은 이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와 체결하는 조약에도 위와 같은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그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 영토를 이양받거나 달리 취득하는 체약국은 영토이양이나 취득의 결과 무국적자로 되는 자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체약국들은 여섯 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이 있는 후 즉시 국제연합 내에 이 협약상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청구의 심사를 신청하고 담당기관에 대한 청구제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1. 이 협약 제1조 제1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적용에 의하여 출생시 그 나라의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체약국과 관련하여 제1조 제1항 또는 제4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발효 후는 물론 발효 전에 출생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협약 제1조 제4항의 규정은 이 협약 발효 후는 물론 발효 전에 출생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3. 이 협약 제2조의 규정은 이 협약 발효 후 체약국 내에서 발견된 기아에 게만 적용된다.

제13조 이 협약은 현재 발효 중이거나 이후 발효될 체약국의 법률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현재 발효 중이거나 이후 발효될 2개국 이상의 체약국간의 협약, 조약 및 약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국적자의 감소를 더욱 촉진시키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다른 방법에 의하여는 해결될 수 없는 체약국간의 모든 분쟁은 분쟁 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된다.

제15조 1. 이 협약은 체약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비자치지역, 신탁통치지역, 식민지, 기타 본국 외 영토에 적용된다. 해당 체약국은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그러한 서명, 비준 또는 가입으로 이 협약이 바로 적용될 본국 외 영토를 선언하여야 한다.

2. 국적과 관련하여 본국 외 영토는 본국 영토와 같이 취급되지 않는 경우나, 이 협약이 그 영토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체약국 또는 본국 외 영토의 헌법이나 관행에 의하여 본국 외 영토의 사전 동의가 필요할 경우, 그 체약국은 이 협약에 대한 서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본국 외 영토의 필요한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동의를 얻으면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이 협약은 사무총장의 접수일로부터 통고서에 명시된 본국 외 영토에 적용된다.

3. 이 조 제2항에서 규정된 12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 체약국은 자신이 국제관계의 책임을 지고 있고 이 협약 적용에 필요한 동의가 서류 중에 있는 본국 외 영토와의 교섭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 1. 이 협약은 1961년 8월 30일부터 1962년 5월 31일까지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에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서명에 개방된다.

- (a) 국제연합 회원국.
 - (b) 향후 무국적자 근절 또는 감소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기타 국가.
 - (c)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서명 또는 가입이 초청된 국가.
3.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4. 이 협약은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가 기탁됨으로써 발효한다.
- 제17조 1.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어떤 국가도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관하여 유보를 할 수 있다.
2. 이 협약에 대한 기타의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18조 1. 이 협약은 여섯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로부터 2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의 여섯 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 이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서는 그 국가의 비준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90일 되는 날 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협약이 발효되는 날 중 늦은 날로부터 발효한다.
- 제19조 1. 체약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통고를 제출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시킬 수 있다. 이 폐기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해당 체약국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체약국의 본국 외 영토에 적용되었을 경우, 그 체약국은 이후 언제든지 해당 영토의 동의를 얻어 그 영토에 대하여만 별도로 협약의 폐기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하며, 사무총장은 이 통고와 접수일자를 다른 모든 체약국에게 통보한다.
- 제20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모든 회원국과 제16조에 규정된 비회원 국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 (a) 제16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17조에 따른 유보.
 - (c) 제18조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
 - (d) 제19조에 따른 폐기.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늦어도 여섯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수탁한 후, 제11조에 따라 동조에 규정된 기구의 설치문제에 관하여 총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21조 이 협약은 발효일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등록된다.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The Contracting States,
Acting in pursuance of resolution 896(IX),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4 December 1954,
Considering it desirable to reduce statelessness by international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A Contracting State shall grant its nationality to a person born in its territory who would otherwise be stateless. Such nationality shall be granted:
 - (a) At birth, by operation of law, or
 - (b) Upon an application being lodged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y, by or on behalf of the person concerned, in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national law.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no such application may be rejected. A Contracting State which provides for the grant of its nationality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b) of this paragraph may also provide for the grant of its nationality by operation of law at such age an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may be prescribed by the national law.

2. A Contracting State may make the grant of its nationality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b)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ubject 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 (a) That the application is lodged during a period, fixed by the Contracting State, beginning not later than at the age of eighteen years and ending not earlier than at the age of twenty-one years, so, however, that the person concerned shall be allowed at least one year during which he may himself make the application without having to obtain legal authorization to do so;
 - (b) That the person concerned has habitually resided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for such period as may be fixed by that State, not exceeding fiv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lodging of the application nor ten years in all;
 - (c) That the person concerned has neither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 national security nor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five years or more on a criminal charge;
 - (d) That the person concerned has always been stateles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b) and 2 of this article, a child born in wedlock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whose mother has the nationality of that State, shall acquire at birth that nationality if it otherwise would be stateless.
4. A Contracting State shall grant its nationality to a person who would otherwise be stateless and who is unable to acquire the nationality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ose territory he was born because he has passed the age for lodging his application or has not fulfilled the required residence conditions, if the nationality of one of his parents at the time of the person's birth was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first above-mentioned. If his parents did not possess the same nationality at the time of his birth, the question whether the nationality of the person

concerned should follow that of the father or that of the mother shall be determined by the national law of such Contracting State. If application for such nationality is required, the application shall be made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by or on behalf of the applicant in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national law.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5 of this article, such application shall not be refused.

5. The Contracting State may make the grant of its nationa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ubject 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 (a) That the application is lodged before the applicant reaches an age, being not less than twenty-three years, fixed by the Contracting State;
 - (b) That the person concerned has habitually resided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for such period immediately preceding the lodging of the application, not exceeding three years, as may be fixed by that State;
 - (c) That the person concerned has always been stateless.

Article 2

A foundling found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be considered to have been born within that territory of parent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that State.

Article 3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obligations of Contracting States under this Convention, birth on a ship or in an aircraft shall be deemed to have taken place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whose flag the ship flies or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in which the aircraft is registered, as the case may be.

Article 4

1. A Contracting State shall grant its nationality to a person, not born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who would otherwise be stateless, if the nationality of one of his parents at the time of the person's birth was that of that State. If his parents did not possess the same nationality at the time of his birth, the question whether the nationality of the person concerned should follow that of the father or that of the mother shall be determined by the national law of such Contracting State. Nationality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be granted:

- (a) At birth, by operation of law, or
 - (b) Upon an application being lodged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y, by or on behalf of the person concerned, in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national law.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no such application may be rejected.
2. A Contracting State may make the grant of its nationa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ubject 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 (a) That the application is lodged before the applicant reaches an age, being not less than twenty-three years, fixed by the Contracting State;
 - (b) That the person concerned has habitually resided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for such period immediately preceding the lodging of the application, not exceeding three years, as may be fixed by that State;
 - (c) That the person concerned has not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 national security;
 - (d) That the person concerned has always been stateless.

Article 5

1. I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entails loss of nationality as a consequence of any change in the personal status of a person such as

marriage, termination of marriage, legitimation, recognition or adoption, such loss shall be conditional upon possession or acquisition of another nationality.

2. If, under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a child born out of wedlock loses the nationality of that State in consequence of a recognition of affiliation, he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recover that nationality by written application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and the conditions governing such application shall not be more rigorous than those laid down in paragraph 2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Article 6

I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provides for loss of its nationality by a person's spouse or children as a consequence of that person losing or being deprived of that nationality, such loss shall be conditional upon their possession or acquisition of another nationality.

Article 7

1. (a) I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entails loss or renunciation of nationality, such renunciation shall not result in loss of nationality unless the person concerned possesses or acquires another nationality;
(b)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where their applica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stated in articles 13 and 14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pproved on 10 December 1948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2. A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who seeks naturalization in a foreign country shall not lose his nationality unless he acquires or has been accorded assurance of acquiring the nationality of that foreign country.
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4 and 5 of this article, a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lose his nationality, so as to become

stateless, on the ground of departure, residence abroad, failure to register or on any similar ground.

4. A naturalized person may lose his nationality on account of residence abroad for a period, not less than seven consecutive years, specified by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concerned if he fails to declare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his intention to retain his nationality.
5. In the case of a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born outside its territory, the law of that State may make the retention of its nationality after the expiry of one year from his attaining his majority conditional upon residence at that time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or registration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y.
6. Except in the circumstances mentioned in this article, a person shall not lose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if such loss would render him stateless, notwithstanding that such loss is not expressly prohibited by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onvention.

Article 8

1.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deprive a person of his nationality if such deprivation would render him stateless.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person may be deprived of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 (a)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under paragraphs 4 and 5 of article 7, it is permissible that a person should lose his nationality;
 - (b) Where the nationality has been obtained by misrepresentation or frau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Contracting State may retain the right to deprive a person of his nationality, if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it specifies its retention of such right o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grounds, being grounds existing in its national law at that time:
 - (a) That, inconsistently with his duty of loyalty to the Contracting State,

the person:

(i) Has, in disregard of an express prohibition by the Contracting State rendered or continued to render services to, or received or continued to receive emoluments from, another State, or

(ii) Has conducted himself in a manner seriously prejudicial to the vital interests of the State;

(b) That the person has taken an oath, or made a formal declaration, of allegiance to another State, or given definite evidence of his determination to repudiate his allegiance to the Contracting State.

4.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exercise a power of deprivation permitted by paragraphs 2 or 3 of this article except in accordance with law, which shall provide for the person concerned the right to a fair hearing by a court or other independent body.

Article 9

A Contracting State may not deprive any person or group of persons of their nationality on racial, ethnic, religious or political grounds.

Article 10

1. Every treaty between Contracting States providing for the transfer of territory shall include provisions designed to secure that no person shall become stateless as a result of the transfer. A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best endeavours to secure that any such treaty made by it with a State which is not a Party to this Convention includes such provisions.

2. In the absence of such provisions a Contracting State to which territory is transferred or which otherwise acquires territory shall confer its nationality on such persons as would otherwise become stateless as a result of the transfer or acquisition.

Article 1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promote the establish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as soon as may be after the deposit of the six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of a body to which a person claiming the benefit of this Convention may apply for the examination of his claim and for assistance in presenting it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Article 12

1. In relation to a Contracting State which does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1 or of article 4 of this Convention, grant its nationality at birth by operation of law,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1 or of article 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to persons born before as well as to persons born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born before as well as to persons born after its entry into force.
3.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shall apply only to foundlings found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at State.

Article 13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affecting any provisions more conducive to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which may be contained in the law of any Contracting State now or hereafter in force, or may be contained in any other convention, treaty or agreement now or hereafter in force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Article 14

Any dispute between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hich cannot be settled by other means shall be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t the request of any on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rticle 15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all non-self-governing, trust, colonial and other non-metropolitan territories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which any Contracting State is responsible; the Contracting State concerned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declare the non-metropolitan territory or territori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ipso facto as a result of such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2. In any case in which, for the purpose of nationality, a non-metropolitan territory is not treated as one with the metropolitan territory, or in any case in which the previous consent of a non-metropolitan territory is required by the constitutional laws or practices of the Contracting State or of the non-metropolitan territory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that territory, that Contracting State shall endeavour to secure the needed consent of the non-metropolitan territory within the period of twelve months from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by that Contracting State, and when such consent has been obtained the Contracting State shall notif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territory or territories named in such notification from the date of its receipt by the Secretary-General.
3. After the expiry of the twelve-month period mention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ed shall inform the Secretary-General of the results of the consultations with those non-metropolitan territories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they are responsible and whose consent to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may have been withheld.

Article 16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from 30 August 1961 to 31 May 1962.

2.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on behalf of:
 - (a) Any Stat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 (b) Any other State invited to attend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Elimination or Reduction of Future Statelessness;
 - (c) Any State to which an invitation to sign or to accede may be address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3.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4.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the St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7

1.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any State may make a reservation in respect of articles 11, 14 or 15.
2. No other reservations to this Convention shall be admissible.

Article 18

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two year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six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six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i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eposit by such State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or on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ichever is the later.

Article 19

1. Any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at any time by a written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 Nations. Such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for the Contracting State concerned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by the Secretary-General.
2. In cases whe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this Convention has become applicable to a non-metropolitan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that State may at any time thereafter, with the consent of the territory concerned, give notice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nouncing this Convention separately in respect to that territory.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such notice by the Secretary-General, who shall notify all other Contracting States of such notice and the date of receipt thereof.

Article 20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notify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non-member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16 of the following particulars:
 - (a)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under article 16;
 - (b) Reservations under article 17;
 - (c) The date upo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n pursuance of article 18;
 - (d) Denunciations under article 19.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fter the deposit of the six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t the latest,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General Assembly the question of the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such a body as therein mentioned.

Article 21

This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New York, this thirtieth day of August,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one, in a single copy,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and which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and certified copies of which shall be deliver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the non-member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16 of this Convention.